KOSHA GUIDE

P - 97 - 2023

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

2023. 8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참고하거나 사업장 안전·보건 수준향상에 필요한 기술적 권고 지침임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최 재 수

○ 개정자 : 이 정 석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오상규

- 제·개정 경과
 - 1995년 9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- 1995년 10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 의결
 - 2000년 11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- 2000년 12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- 2007년 10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심의
 - 2007년 11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심의
 -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 - 2023년 7월 화학안전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관련규격 및 자료
 - 국제노동기구(ILO) Convention No. 174, "The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", 1993
 -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CFR 1910.119, "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"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)
- 안전보건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3년 8월 24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<u>목 차</u>

1.	목적	L
2.	적용범위	L
3.	용어의 정의]	L
4.	점검내용	2
5.	점검팀 구성	2
6.	점검시기	3
7.	점검표 작성	3
8.	점검보고서 작성	3
9.	점검결과의 처리	3
10	. 점검에 필요한 자료	1
<1	부록 1> 가동전 안전점검표에 포함될 항목의 예시	5

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중 가동전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설비의 설치, 공정·설비의 변경 또는 공정·설비의 정비·보수 후 공장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설비 가동전 실시하는 제반 안전점검(이하 "가동전 점검" 또는 "점검"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시운전 (Start-up)"이라 함은 기계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작동을 개시하여 단일기기 또는 각 설비의 기계적 성능이 명세·설계기준 등과 일치 (또는 도달)하는지를 확인하는 운전을 말한다.
 - (나) "개선항목 (Punch list)"이라 함은 기계설치 완료 또는 시운전 전에 설비 및 자재류가 명세·설계도면 등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나 개선하여야 하는 항목표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점검내용

가동전 점검 시에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점검한다.

- (1) 신설, 변경 또는 정비·보수된 설비가 제작기준대로 제작되었는지 확인
- (2) 신설, 변경 또는 정비·보수된 설비가 설치기준 또는 시방서에 따라 설치되었는지의 확인
- (3) 신설, 변경 또는 정비·보수된 설비가 규정된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되었는지의 확인
- (4) 신설, 변경 또는 정비·보수된 설비의 안전장치와 자동제어기능의 확인
- (5) 위험성 평가보고서 중 개선권고 사항이 이행되었는지의 확인
- (6) 안전운전에 필요한 절차 및 자료
- (7) 시운전 및 운전개시에 필요한 준비

5. 점검팀 구성

가동전 점검을 위한 팀은 점검범위에 따라 별도의 가동전 점검을 위해 사전 교육·훈련된 기술자 또는 다음과 같은 기술자들로 구성한다.

- (1) 팀 책임자
- (2) 해당공정·설비 설계기술자
- (3) 해당공정 · 설비 운전기술자
- (4) 검사 및 정비 기술자
- (5) 비상계획 및 안전관리자
- (6) 특수설비 및 주요 회전기기의 경우 제작 전문기술자(필요 시)

6. 점검시기

가동전 점검은 설비의 신설, 변경 또는 정비·보수를 위한 기계, 전기, 배관 및 계장 공사가 완료된 후부터 시우전 전까지의 기간에 점검한다.

7. 점검표 작성

- (1) 점검팀은 점검할 대상설비에 대하여 점검항목, 점검사항 및 점검결과 기재 난 등으로 구분하여 점검표를 준비한다.
- (2) 점검표는 각 공정 또는 설비별로 설계도서, 설치시방서 및 안전운전절차서 에 따라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.
- (3) 점검표는 <부록 1>에서 예시한 "가동전 안전점검표에 포함될 항목"을 참고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도록 단위공정별로 작성한다.

8. 점검보고서 작성

점검팀은 작성된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고, 명세서 및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<별지 1>의 "가동전 안전점검 보고서"를 작성한다.

9. 점검결과의 처리

- (1) 점검보고서중 결함이 있거나 또는 개선대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<별지 2> "개선항목 요구표"를 작성한다.
- (2) 개선항목 요구표에 포함된 사항은 시운전 전에 개선이 완료되도록 <별지 3>의 "개선항목 실행 계획서"를 작성하고, 이를 이행한다.
- (3) 가동전 안전점검보고서, 개선항목 요구표 및 개선항목 실행계획서는 공장운전 개시 후 최소한 3년간 보관한다.

10. 점검에 필요한 자료

가동전 점검표 작성 및 점검시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

- (1) 기계장치 및 설비 목록표
- (2) 안전장치 명세서
- (3) 기계설비 배치도
- (4) 기기설치 시방서
- (5) 공사설계 시방서
- (6) 배관검사 절차서
- (7) 기밀시험 절차서
- (8) 공정 흐름도(PFD) 및 배관·계장도면(P&ID)
- (9)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
- (10) 내화시험 성적서
- (11) 회전기계의 부하시험 절차서
- (12)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배치도
- (13) 소방설비 설계명세 및 배치도
- (14) 전기단선도
- (15)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용 전기기계 · 기구의 방폭등급
- (16) 안전운전절차서
- (17) 각 기기별로 제작자의 운전정비 절차서

<부록 1>

가동전 안전점검표에 포함될 항목의 예시

1. 공정운전을 위한 일반사항

- 1.1 공장의 사용 및 운전을 위한 각종 인허가의 신청 및 취득
- 1.2 안전운전 절차서 확보
- 1.3 설비(기기)별 제작자의 설치 시방서 확보
- 1.4 운전 및 정비 절차서 확보
- 1.5 촉매 등의 장입 절차서
- 1.6 설치상태와 일치된 공정 흐름도 및 배관·계장도 확보
- 1.7 공정별 운전원 및 정비작업원 교육 실시
- 1.8 시운전절차서 확보
- 1.9 공장성능시험절차서 확보

2. 시운전 준비

- 2.1 기기 설치완료 확인
- 2.2 건설 기간중에 기기보호용으로 도포한 녹 방지제 및 기름의 제거확인
- 2.3 윤활유의 준비
- 2.3.1 기기 제작자가 추천한 윤활유 목록 및 준비 확인
- 2.3.2 윤활유의 주입 확인
- 2.3.3 윤활유의 주입장치 및 세정유의 드레인 확인
- 2.4 누설방지용 시일(Seal) 및 패킹(Packing)
- 2.4.1 누설방지용 시일 및 패킹의 조정 또는 설치 확인
- 2.5 임시 가설 받침대, 브레이싱(Bracing) 기타 보강용 사용자재의 철거 확인

- 2.6 회전기기의 조립
 - 2.6.1 회전기기의 회전방향의 확인
 - 2.6.2 회전부의 간섭여부 확인
 - 2.6.3 윤활 및 냉각장치의 확인
 - 2.6.4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공차 범위내로 조립·설치 확인
 - 2.6.5 무부하 장치의 확인
 - 2.6.6 안전장치의 설치 확인
- 2.7 단위공정 설비간의 접속
 - 2.7.1 단위공정간 설비의 접속 배관 정렬의 확인
 - 2.7.2 단위공정간 접속부분은 명세서와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 확인
 - 2.7.3 맹판, 잠금장치(Car seal) 등의 제거 확인
- 2.8 기밀 및 압력시험
- 2.8.1 단위공정 구역간의 종합 기밀시험 수행확인
- 2.8.2 기밀 및 압력시험이 적용 코드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확인
- 2.8.3 시험에 대한 보고서 확인
- 2.9 검사 및 시험
 - 2.9.1 모든 장치 및 설비 설계는 설계시방서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확인
 - 2.9.2 모든 장치 및 설비 제작은 제작시방서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확인
 - 2.9.3 모든 장치 및 설비 검사시험은 적용코드에 맞게 되었는지 확인
 - 2.9.4 보험이나 인허가에 필요한 검사의 수행 및 입회검사 확인
- 2.10 압력방출장치
 - 2.10.1 압력방출장치별로 압력설정치 목록표 준비
 - 2.10.2 압력방출장치의 시험은 공인된 시험설비에 의해 수행되었는지 확인
 - 2.10.3 시험 후 필요에 따라 봉인되었는지 확인
 - 2.10.4 각 압력방출장치 시험에 대한 개별 식별 부착 확인
 - 2.10.5 시험결과의 보고서 확인

- 2.11 세척
 - 2.11.1 세척작업의 절차서 확인
 - 2.11.2 세척제의 준비
 - 2.11.3 세척된 내부 상태 확인
 - 2.11.4 세척작업[플러싱(Flushing), 블로잉(Blowing) 및 화학적/기계적인 작업]의 완료 확인
 - 2.11.5 세척작업 결과보고서 확인
- 2.12 임시맹판 및 스트레이너(Strainer) 교체
 - 2.12.1 배관의 퍼지(Purging) 및 플러싱 확인
 - 2.12.2 필요한 임시 스크린(Screen) 및 스트레이너 준비와 설치
 - 2.12.3 필요한 경우 시운전중 스크린 및 스트레이너의 여과물질 제거
 - 2.12.4 세척시 격리에 필요한 임시 맹판 준비 및 설치
- 2.12.5 세척완료 후 임시 스크린 및 스트레이너의 제거와 영구 스크린 및 스트레이너 설치
- 2.12.6 세척완료 후 임시 맹판의 제거 확인
- 2.12.7 세척작업 기록의 확인
- 2.13 퍼지(스팀 또는 불활성 가스 등)
 - 2.13.1 퍼지를 위한 연결부 설치 확인
 - 2.13.2 퍼지용 가스 등(스팀 또는 질소가스) 준비
 - 2.13.3 안전범위 내에서의 퍼지 수행 확인
- 2.14 건조
 - 2.14.1 운전물질, 촉매 등의 오염방지를 위한 설비건조 수행
 - 2.14.2 내화물질 및 라이닝(Lining) 등의 양생 시간 유지
 - 2.14.3 배기가스 회수 또는 흡수 설비의 폭발방지 기능 확인
- 2.15 용기내 충진
 - 2.15.1 모래, 자갈, 볼(Ball) 및 링(Ring) 등 충진물 받침대 설치

- 2.15.2 화학물질, 레진(Resin), 건조제 또는 촉매제 등 충진
- 2.15.3 충진물의 양 등의 적정성 검사
- 2.15.4 충진기록의 유지
- 2.16 청소
- 2.16.1 설비 및 기기의 설치가 끝난 후 가설설비의 제거 및 청소 확인
- 2.16.2 세척제의 안전한 처리
- 2.16.3 가동전 점검후 기후, 부식 및 손상으로부터 보호조치
- 2.17 정비용 예비품 및 특수공구
 - 2.17.1 제작자가 추천하는 예비품 및 특수공구 목록표 확인
 - 2.17.2 예비품과 특수공구의 관리시스템 및 보관상태
 - 2.17.3 예비품의 검수 및 관리 기준 확인

3. 각 기기별 점검사항

- 3.1 용기류
 - 3.1.1 용기의 설치와 내부 부속장치의 조립상태 점검
 - 3.1.2 용기내부의 세척상태 및 건조상태
 - 3.1.3 외부단열 및 도장상태 확인
 - 3.1.4 배관과 접속되는 플랜지와의 일치 확인
 - 3.1.5 액면계 및 시료 채취에 필요한 부속설비의 확인
- 3.1.6 시험가동 중 볼트 토크(Bolt torque) 재조정
- 3.2 열교환기
 - 3.2.1 제작자 공장검사 보고서의 확인(압력시험, 치수검사 및 튜브팽창 비율 또는 용접상태)
 - 3.2.2 플랜지 면 등 기계가공면의 보호상태
 - 3.2.3 정비 및 청소를 위한 안전공간 확인
- 3.3 열교환기(공냉식)

- 3.3.1 팬조립시 간격의 조정 확인
- 3.3.2 통풍구 작동과 운전 연동의 점검
- 3.3.3 가설재의 제거
- 3.4 가열기
 - 3.4.1 설계명세서 및 적용기준에 따른 압력검사 수행
 - 3.4.2 가동 전 버너 기능 및 예비점화 점검
 - 3.4.3 연료배관을 압축공기로 청소한 후 청결상태 점검 버너와 연결 확인
 - 3.4.4 댐퍼 작동상태 및 각종 지시계 등의 위치 점검
 - 3.4.5 공기 예열기, 공기공급기 및 배기팬의 작동 점검
 - 3.4.6 내화벽돌의 건조 및 건조 후 내화벽돌 균열점검
 - 3.4.7 필요시 화학세제 또는 물로서 세척 확인
 - 3.4.8 필요시 액체 열매체 충진 확인
 - 3.4.9 건조 후 퍼지 작업의 수행 확인
 - 3.4.10 단열 및 도장상태 확인
 - 3.4.11 제작자의 전문기술자 입회하에 설치 및 가동전 점검
- 3.5 회전기기(펌프, 압축기, 터빈)
 - 3.5.1 기초 밑판의 수평 확인 및 그라우팅(Grouting) 작업 확인
 - 3.5.2 펌프, 압축기 및 구동장치와 연결된 배관의 응력제거 확인
 - 3.5.3 윤활 및 냉각장치의 가동전 점검
 - 3.5.4 제작자의 추천에 따른 윤활유, 실링유 또는 냉각유 등의 주입
 - 3.5.5 운전설비의 정압기 및 과부하 방지장치의 점검
 - 3.5.6 정압기의 작동상태 확인
 - 3.5.7 스팀 트랩(Steam trap)의 기능 확인
 - 3.5.8 회전속도계(Tachomenter)의 기능 확인
 - 3.5.9 베어링류의 윤활상태 확인
 - 3.5.10 무부하 기능의 확인

- 3.5.11 무부하 운전시 구동기의 회전방향 확인
- 3.5.12 무부하 운전시 윤활유의 액위와 온도 점검
- 3.5.13 경보장치의 점검
- 3.5.14 회전기기 및 인근 배관의 진동점검
- 3.5.15 축부위 온도 점검
- 3.5.16 냉각수 순환사항 및 누설 점검
- 3.5.17 각종 계기의 작동 점검
- 3.5.18 점검사항의 기록유지
- 3.6 저장탱크
 - 3.6.1 수압 시험후 탱크 및 내부설비 검사
 - 3.6.2 세척(화학세척 또는 물 세척) 상태의 점검
 - 3.6.3 탱크의 진원도 측정결과 확인
 - 3.6.4 사다리의 설치 상태와 점검구의 상태 확인
 - 3.6.5 탱크 상부의 추락방지 난간대 설치 확인
 - 3.6.6 단열 또는 도장 상태 점검
 - 3.6.7 밀폐가 필요한 경우 작업 수행후 재 밀폐 확인
- 3.7 배관설비
 - 3.7.1 배관이나 부속품이 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 확인
 - 3.7.2 사용된 재질 및 규격과 설계시방서 및 적용 코드와의 일치여부 확인
 - 3.7.3 배관 접속이 무리 없이 진행되어 불필요한 응력발생 여부 확인
 - 3.7.4 압력시험 스케줄에 따라 모든 배관의 수압 또는 기압시험 수행 확인
 - 3.7.5 밸브류의 설치방향이 유체흐름 방향과 일치하는지 확인
 - 3.7.6 수압시험 전, 에어포켓(Air pocket)이 생길 수 있는 오리피스는 제거 및 수압 시험 후 오리피스 재설치

- 3.7.7 수압 시험 또는 기압 시험 후 맹판 제거 확인
- 3.7.8 단열시공 또는 용접부 플랜지 등의 도장시공은 각 배관계별로 시험이 완료된 후 수행여부 확인
- 3.7.9 지하배관의 모든 용접부위들은 규정된 시험을 완료하고 도장 및 특수 도포하는지 확인
- 3.7.10 배관의 지지대 및 배관걸이 등이 설계에 맞게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
- 3.7.11 필요시 시운전 또는 가동중에 조정이 필요한 배관걸이 및 지지대 등 의 점검과 조정
- 3.7.12 특정밸브에 필요한 특수밸브패킹의 설치
- 3.7.13 필요한 경우 영구적인 필터의 설치
- 3.7.14 필요한 경우 밸브에 잠금장치 설치
- 3.7.15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를 기록하고 페인트 등으로 밸브 표시
- 3.7.16 시험가동중에 지지대 위치, 진동 및 열팽창 등의 점검과 교정
- 3.7.17 가동전 점검 및 가동시의 볼트토크 재조정
- 3.8 전력계통
 - 3.8.1 메가미터(Megameter)를 사용하여 전선로의 절연시험
 - 3.8.2 메가미터를 사용하여 전동기와 변압기의 권선의 상간, 상과 접지간 절연 시험
- 3.8.3 접지의 연결연속성과 대지에 대한 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한 접지시스템 점검
- 3.8.4 100 KV 이상되는 오일 절연방식의 변압기에서 절연유 샘플검사
- 3.8.5 필요한 경우 전기기어의 오일 충진 확인
- 3.8.6 모든 수배전반. 전동기 제어장치 및 발전기의 시운전 및 조정
- 3.8.7 수배전반과 회로차단기의 상호연동 시험

- 3.8.8 인ㆍ허가에 필요한 검사관의 입회시험 및 승인
- 3.8.9 모든 시험이 완료된 후 변전소의 통전 확인
- 3.8.10 상(Phase)의 순서, 극성, 전동기의 회전방향 점검
- 3.8.11 비상전력 및 조명 시스템의 설치 점검
- 3.8.12 점검 및 시험결과의 기록유지
- 3.9 계장설비
 - 3.9.1 무부하상태에서 계기 운전성 점검
 - 3.9.2 표준시험장비로 계기의 영점과 100 % 조정 및 제어점 설정 확인
 - 3.9.3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공기공급용 튜브는 청정공기로 세척작업 여부 확인
 - 3.9.4 모든 공기 공급용 튜브 및 연결부 기밀성 점검
 - 3.9.5 공기에 의하여 제어되는 계기 및 튜브에 대한 누설시험
 - 3.9.6 계장용 공정배관에 대한 기밀시험
 - 3.9.7 각 제어루프를 기초로 하는 계기(제어변동)가 설계시방과 같이 작동하는 지의 여부를 모의 신호로 확인하는 루프 체크
 - 3.9.8 모든 전기적 신호와 경보배선은 전기의 연속성 확보, 전원 및 극성 등 의 정확성 점검
- 3.9.9 열전대는 보호관내의 적절한 위치 배정, 올바른 극성 연결 및 수신계기 와의 연속성 등 점검
- 3.9.10 오리피스의 번호판 및 흐름방향 확인
- 3.9.11 압력검사시 일시 제거되거나 격리된 계장품(제어밸브, 터빈미터 등)의 시스템 점검 후 재설치 확인
- 3.9.12 배관 및 장치(기기)의 세척 시 일시 제거되거나 격리된 계기는 재설치
- 3.9.13 필요시 시일링액 주입
- 3.9.14 최적의 자동운전 및 안전운전을 위하여 공장기동이나 정지시 또는 긴 급차단시 기기 등의 연동작동을 확인하는 시퀸스테스트

- 3.9.15 각 기록계의 기록용지의 준비 및 장입
- 3.9.16 시운전시 각 계기의 운전상태를 기록하는 운전기록지(Log sheet) 준비
- 3.9.17 특수한 계장제어 설비는 제작자의 기술자 입회하에 제어시스템 점검
- 3.10 보일러
 - 3.10.1 설계명세서 및 적용코드에 의한 압력시험 수행확인
 - 3.10.2 설치완성 검사한 후 무부하 상태에서 버너 점화 상태 점검 및 조절
 - 3.10.3 공기예열기, 댐퍼 및 수트블로어(Soot blower)의 운전 및 작동시험
 - 3.10.4 제작자의 온도상승지침에 따라 내화벽돌의 건조 확인
 - 3.10.5 스팀배관의 세정 상태 확인
 - 3.10.6 최초의 운전시 공급되는 물은 수처리된 물이 공급되는지 확인
 - 3.10.7 액면계의 위치와 감시 등의 확인
 - 3.10.8 보조기기들은 형식 및 시방서에 따라 시운전 및 점검
 - 3.10.9 안전밸브의 작동시험 및 설정치 확인
 - 3.10.10 필요시 제작자의 기술자 입회하에 설치 및 가동전 점검
- 3.11 유틸리티 설비
 - 3.11.1 수처리설비의 운전개시전 인허가 신청 및 취득
 - 3.11.2 수처리 설비는 설치완성 검사를 한 후 무부하 시험상태에서 점검하고 조정
 - 3.11.3 배출수의 수질시험
 - 3.11.4 소화설비는 설치 완성 검사후 무부하 시험상태에서 점검하고 조정
 - 3.11.5 디젤 엔진펌프는 정기적으로 자동작동시험 및 점검
 - 3.11.6 소화설비에 대한 인허가 신청 및 보험회사의 점검과 취득
 - 3.11.7 화재진압용 필수 소화약제 확보와 고정식 및 이동식 소화장비의 설치 확인

<별지 1>

가동전 안전점검 보고서			결	검 토	확 인	승 인	
		200 년 월 일		재			
점검 대상	일련 번호	점 검 결 과	점검자		개 선 형	大 목	비고

<별지 2>

개선항목(Punch list) 요구표			결	검 토	확 인	승 인
200 년 월 일						
번호	개선항목	개선진행 결과		책임부서	개선일자	비고

<별지 3>

개선항목(Punch list) 실행 계획			검 . 결	검 토	확 인	승 인
	200 년 월	일	재			
번호	개 선 항 목	개 선 방 법		개선부서	실행일정	비고

안전보건기술지침 개정 이력

□ 개정일 : 2023. 8. 24.

○ 개정자 : 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오상규

○ 개정사유 :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조항 삭제

○ 주요 개정내용

- (1. 목적)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2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의 7(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 의 2(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 등)"법령 조항 삭제